

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 
(김현기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659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2월 15일

발 의 자: 김현기, 김 경, 김규남,  
김지향, 박유진, 박춘선,  
심미경, 옥재은, 이경숙,  
이병도, 이은림, 최재란,  
최호정, 허 훈 의원(14  
명)

### 1. 제안이유

-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상한을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이 개정(2023.12.14.)됨에 따라 ‘서울특별시 의정비심의위원회’에서 결정(2024.2.14.)한 ‘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’에 맞춰 의정활동비를 반영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‘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’의 의정자료수집·연구비 지급액을 “월 1,200,000원”에서 “월 1,500,000원”으로 변경하고 보조활동비 지급액을 “월 300,000원”에서 “월 500,000원”으로 변경함([별표 1]).
- 나. 의정활동비 개정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함(부칙 제2조).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과 같은 법 시행령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- 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의정자료수집·연구비 지급액란 중 “월 1,200,000원”을 “월 1,500,000원”으로 하고, 보조활동비 지급액란 중 “월 300,000원”을 “월 500,000원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적용례)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부터 적용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		개   정   안																		
<p>[별표 1]</p> <p>의정활동비 지급 기준표(제2조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 style="width: 15%;">구분</th> <th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의정활동비</th> </tr> <tr> <th style="width: 40%;">의정자료 수집·인구비</th> <th style="width: 45%;">보조활동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지급액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월 1,200,000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월 300,000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구분	의정활동비		의정자료 수집·인구비	보조활동비	지급액	월 1,200,000원	월 300,000원	<p>[별표 1]</p> <p>의정활동비 지급 기준표(제2조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 style="width: 15%;">구분</th> <th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의정활동비</th> </tr> <tr> <th style="width: 40%;">의정자료 수집·인구비</th> <th style="width: 45%;">보조활동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지급액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월 1,500,000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월 500,000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구분	의정활동비		의정자료 수집·인구비	보조활동비	지급액	월 1,500,000원	월 500,000원
구분	의정활동비																				
	의정자료 수집·인구비	보조활동비																			
지급액	월 1,200,000원	월 300,000원																			
구분	의정활동비																				
	의정자료 수집·인구비	보조활동비																			
지급액	월 1,500,000원	월 500,000원																			

#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### I. 비용추계 요약

##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(의정활동비)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비용 발생

#### 2. 비용추계의 전제

가. 대상 : 제2조(의정활동비)

나. 전제

-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수는 정원으로 추계하고, 추계기간 동안 변동이 없는 것으로 전제
- 의정활동비 변경에 따른 일부개정조례안의 금액을 기준으로 5년간(2024~2028년) 비용추계
- 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발생이 예상됨

#### 3. 비용추계의 결과

- 총비용 ≍ 3,360,000천원(연간 672,000천원)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 (2024년)	2차년도 (2025년)	3차년도 (2026년)	4차년도 (2027년)	5차년도 (2028년)	합계
세입	○						
	소계(a)						
세출	제2조(의정활동비)	672,000	672,000	672,000	672,000	672,000	3,360,000
	소계(b)	672,000	672,000	672,000	672,000	672,000	3,360,000
□ 총 비용(b-a)		672,000	672,000	672,000	672,000	672,000	3,360,000

#### 4. 덧붙이는 의견

#### 5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     재정분석담당관

담    당    관      오희선

추계세제팀장      이정수

추 계 분 석 관      이홍래

☎ 02-2180-7952

e-mail : hong1004@seoul.go.kr

## 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### 1. 비용요소

-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(의정활동비)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비용 발생

### 2. 세부추계내역

- 총 비용 ≙ 3,360,000천원(연간 672,000천원)

(단위 : 천원)

연도		1차년도 (2024년)	2차년도 (2025년)	3차년도 (2026년)	4차년도 (2027년)	5차년도 (2028년)	합계
구분	○						
	소계(a)						
세입	제2조(의정활동비)	672,000	672,000	672,000	672,000	672,000	3,360,000
	소계(b)	672,000	672,000	672,000	672,000	672,000	3,360,000
□ 총 비용(b-a)		672,000	672,000	672,000	672,000	672,000	3,360,000

- 의정활동비 ≙ 3,360,000천원(연간 672,000천원)

- 5년간 의정활동비 =  $\sum_{i=1}^5 (\text{연간비용})_i$

$i$  = 비용추계 연차(2024년~2028년)

- 연간비용 ≙ 500,000원(의정활동비 인상분) × 112명(서울시의원 수) × 12월 = 672,000천원

### 〈의정활동비 변경내역〉

(단위: 원)

구분	지급액		
	현행	개정 후	증감
계 (의정활동비)			500,000
의정자료 수집·연구비	1,200,000	1,500,000	300,000
보조활동비	300,000	500,000	200,000